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49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한병도·위성곤·이정문

김 윤・김병주・이정헌

정일영 · 박정현 · 양부남

윤건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 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·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·보도하는 행위, 선거여론 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 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 성・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73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6조제1항제5호 중 "한 자,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 짓의 자료를 제출한"을 "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6. 제108조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273조제1항 중 "제25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10호·제11호"를 "제252조제2항, 제25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10호·제11호"로, "제257조"를 "제256조제1항제5호(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의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에 한한다), 제257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정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고발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	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	
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	
다.	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	5
론조사를 한 자, 같은 조 제9	<u>ট</u>
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	
의 자료를 제출한 자, 같은 조	
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	
·권유·유도한 자, 같은 항	
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	
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・권유	
• 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	
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	
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・보	
도한 자	
<u><신 설></u>	6. 제108조제9항에 따른 요구를
	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
	<u>자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第273條(裁定申請) ① 제230조부	第273條(裁定申請) ①

터 제234조까지, 제237조부터 제25 제239조까지, 제248조부터 제25 0조까지, 제255조제1항제1호· 제2호·제10호·제11호 및 제3항·제5항,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(중앙당에 한한다)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-----제252조제2항, 제255조제 1항제1호·제2호·제10호·제1 1호 ----- 제256조제1항제5호 (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 조사를 한 자의 경우 해당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 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 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에 한한다), 제257조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